< 면책절차 안내 >

1. 일반적인 절차 진행



* 개인파산의 전체 절차는 6~7개월 정도(법원, 사건에 따라 상이함) 소요되며, **면책결정은 <u>마지막 채권</u> <u>자집회 이후**</u> 약 4주가 소요됩니다.

2. 면책결정의 효력

- 1) 면책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공고 후 14일이 경과됨으로써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(법 제564조 4항, 제565조, 제13조).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,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됩니다(법 제557조 제1항).
- 2)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,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. 다만, 다음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(법 제566조).

①조세	②벌금·과료·형사소송비 용·추징금 및 과태료	③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	④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
⑤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·퇴직금 및 재해보상금	⑥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	⑦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. 다만,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⑧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

3. 개인신용정보 관련 참고사항

- 1) 면책결정 관련 정보: 채무자가 ①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, ②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, ③면책결정 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,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.
- 2)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결정 관련 정보: 말소사유가 있는 경우 <u>채무자는</u> 해당 법원 **채무불이행명부 업무단** 당자에게 말소 신청하면, 법원에서 말소결정 후 신용정보원으로 통보하고 신용정보원에서 삭제합니다.
- ※ 신청서 양식은 '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→대국민서비스→양식모음→민사집행'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